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최고 경영자

#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번호 : SPC-PO-002

개정번호 : 1.0

문서번호 : SPC-PO-002	제 목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등급	대외비
	버 전	Ver.1.0	제정일	2018. 03. 13

제 · 개정이력표

문서번호 : SPC-PO-002	제 목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등급	대외비
	버 전	Ver. 1.0	제정일	2018. 03. 13

## 목 차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적용범위).....	1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제 4 조 (책임사항).....	2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 .....	2
제 5 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지침) .....	2
제 3 장 개인정보 보호 수단.....	3
제 6 조 (개인정보파일) .....	3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	3
제 8 조 (개인정보보호관리) .....	3
제 9 조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3
제 10 조 (기타 개인정보보호조치) .....	3
부칙 .....	5
제 1 조 (시행일) .....	5
제 2 조 (준용) .....	5
제 3 조 (예외적용) .....	5

문서번호 : SPC-PO-002	제 목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등급	대외비
	버 전	Ver. 1.0	제정일	2018. 03. 13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정책은 에스피씨삼립(이하 “회사”라 함)의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상위 정책으로서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임직원"이란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회사에 소속된 내부직원을 말한다.

문서번호 : SPC-PO-002	제 목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등급	대외비
	버 전	Ver. 1.0	제정일	2018. 03. 13

#### 제 4 조 (책임사항)

회사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전 임직원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모든 임직원이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임직원이 본 정책의 내용을 숙지하여 생활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정보보호조직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법적, 규범적, 해당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에게 관련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이 배포되거나 또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4. 개인정보보호 훈련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반은, 실제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모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책 및 지침의 유지관리 및 이행을 위한 충고 및 지침 제공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그들의 업무 범주 내에서 방침의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재 회의 시 개인정보보안 관련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안교육 실시, 불시 점검 등 정보보안 강화 관련 내용을 지시한다.
10. 이 정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임직원 각자의 책임이다.

####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

##### 제 5 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지침)

- ①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의 최상위 정보보호정책으로 정책 및 지침의 체계를 선언한다.
- ② 정책수립을 해야 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개인정보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업 수행 시에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및 실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역할 및 수행 내역은 관련 지침을 통해 정의한다.

문서번호 : SPC-PO-002	제 목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등급	대외비
	버 전	Ver. 1.0	제정일	2018. 03. 13

## 제 3 장 개인정보 보호 수단

### 제 6 조 (개인정보파일)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 8 조 (개인정보보호관리)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9 조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 저장 • 관리 • 이용 • 제공 • 파기를 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의견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제 10 조 (기타 개인정보보호조치)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 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마스킹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 SPC-PO-002	제 목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등급	대외비
	버 전	Ver. 1.0	제정일	2018. 03. 13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3.14>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문서번호 : SPC-PO-002	제 목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문서등급	대외비
	버 전	Ver. 1.0	제정일	2018. 03. 13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본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시점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준용)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본 정책에 따라 수행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예외적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이라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 ① 기술 환경의 변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기술적, 관리적 필요에 따라 지침의 적용을 보류할 긴급할 사유가 있을 경우
- ③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